

제215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
제 2 차 본 회 의 (2016. 1. 27.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	7

〔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. 1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. 1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. 26.

2. 개정이유

-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안전도시사업 중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사항 삭제(안 제5조 제7호)
 - 세계보건기구(WHO) 안전도시 인증 공인기간 만료(15. 3월)
- 나.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2)
 -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이 세계보건기구(WHO) 지정기관에서 독립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, WHO 명칭 공식 표기 제한 등 세계보건기구(WHO)와의 관련성이 없어짐에 따라, 관련조항을 삭제하고,
-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〔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. 1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. 1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. 26.

2. 개정이유

-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, 요금 납부방법 개선,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(안 별표 2, 별표 4)
 - 업종별 사용료 20.9%, 구경별 기본요금 15.2% 인상률 반영
 -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별표 7 신설)
- 나.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(안 제32조의2)
- 다.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(안 제34조)
 - (현행) 체납액의 3%, 월할계산 ⇒ (변경) 2%, 일할계산

라. 규제 삭제함

-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삭제(안 제11조제1항제1호)
- 법령위임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45조, 별표 5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, 요금 납부방법 개선,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,
 - 업종별 요율표(별표 2)의 업종별 사용료 평균 인상률 20.9%와 구경별 기본요금(별표 4)의 평균 인상률 15.2%를 일괄 15% 인상률 금액으로 수정
- ※ 대비표 참조

8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[별표 2]

업종별 효율표(제27조 관련)

업종구분	사용단계별(m')	m ³ 당 단가 (원)	
		상정안	수정안
가정용	1 ~ 20	700	<u>610</u>
	21 ~ 30	920	<u>810</u>
	31이상	1,210	<u>1,060</u>
일반용	1 ~ 30	800	<u>760</u>
	31 ~ 50	960	<u>920</u>
	51 ~ 100	1,120	<u>1,070</u>
	101 ~ 300	1,290	<u>1,230</u>
	301이상	1,450	<u>1,380</u>
산업용	1m ³ 당	810	<u>710</u>

[별표 4]

구경별 기본요금(제27조 및 제33조 관련)

계량기 구경별 (밀리미터)	상정안	수정안
13	890	<u>860</u>
20	2,490	<u>2,430</u>
25	4,000	<u>3,900</u>
32	7,110	<u>6,950</u>
40	12,000	<u>11,720</u>
50	18,390	<u>17,970</u>
75	44,600	<u>43,600</u>
100	76,050	<u>74,340</u>
150	165,700	<u>161,970</u>

〔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. 1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. 1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. 26.

2. 개정이유

-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,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
 - 하수도 사용료 31.3% 인상률 반영(안 별표 1)
 -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제26조, 별표 7)
- 나. 규제 완화함
 -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(안 제16조의2)
 -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(안 제29조)
 - (현행) 체납액의 3%, 월할계산 ⇒ (변경) 2%, 일할계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,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,
 -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별표 1)의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31.3% 인상률 금액에서 일괄 30% 인상률 금액으로 수정.
- ※ 대비표 참조

8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(생략)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업종구분	사용량구분(m ³)	m ³ 당 단가(원)	
		상정안	수정안
가정용	1 ~ 20	160	<u>130</u>
	21 ~ 30	220	<u>180</u>
	31 이상	300	<u>240</u>
일반용	1 ~ 30	160	<u>160</u>
	31 ~ 50	200	<u>200</u>
	51 ~ 100	250	<u>240</u>
	101 ~ 300	290	<u>280</u>
	301 이상	350	<u>340</u>
산업용	1톤당	160	<u>160</u>